

기 본 협 약 서

주식회사 S&I엠텔퍼트 (이하, '회사')와 서비스일반노동조합(이하, '조합')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교섭을 진행하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며, 단체교섭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 1 조 교섭 일자, 시간 및 장소

1. 교섭은 2주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 단, 필요시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
2. 교섭시간은 13:00 ~ 18:00 사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노사간 합의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3. 교섭 장소는 노사가 교대로 섭외하여 통보하되, 회사 또는 조합의 사무실 등 노사 어느 일방에 속하지 않은 외부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외부 장소 대관에 대한 비용은 노사 합의하에 사측이 부담 한다.
4. 본 협약서에 따라 정해진 교섭 일자,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. 단,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적어도 교섭 예정일 3일 전에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 조 교섭위원 및 편의제공

1. 교섭위원은 노사 각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. 단, 조합 내 사업장 교섭위원은 최대 3명으로 구성한다. 교섭위원 명단은 최초 단체교섭 이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.
2. 회사는 조합 교섭위원 3명에 대해 교섭 참석 및 교섭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며, 본 협약서 체결을 위한 교섭 참석 및 이동

시간까지 소급하여 유급으로 부여한다. 조합 교섭위원은 본 조항에 따른 유급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한다.

3. 최초 선정된 교섭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지하기로 하고,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된 교섭위원이 참석하게 될 최초 교섭 2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변경 내용과 변경 이유를 통보하기로 하며, 각 당사자는 변경된 교섭위원이 교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섭에 참여하도록 한다.

제 3 조 회의 개최 및 진행

1. 교섭시에는 각 당사자의 교섭 위원 중 최소 과반수(3명)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.
2. 노사는 최초 단체교섭시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(위임장 등)을 제출하여야 한다. 제2조 제3항에 따라 교섭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와 같다.
3. 대표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교섭의 경우 각 대표자는 교섭위원 중 1인에게 대표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4. 노사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교섭위원 중 간사 각 1명을 지정한다.

제 4 조 회의 참관

교섭위원 이외의 사람은 노사간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, 노사가 합의하여 인정한 경우 외에는 발언권을 제한한다.

제 5 조 평화의무

1. 양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생산적이고 성실하며 평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2.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2022 년 2월 11일

(주) S&I엠텔퍼트

대표이사 노 영 택



서비스일반노동조합

위원장 이 선 규

이선규



01/11/11